

의안번호	2125896
의 퇴 인	박성중 의원
회 답 일	2023. 12. 28.
추 계 번호	23B50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사업자의 조치 명령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83억 3,600만원(연평균 96억 6,7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건, 천원,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연평균
침해사고 분석 건수	3,692	5,054	6,919	9,472	12,967	38,104	7,621
이행점검 대상 건수(a)	1,108	1,516	2,076	2,842	3,890	11,432	2,286
이행점검 단가(b)	4,000	4,088	4,174	4,262	4,352	—	—
소요예산 (a×b)	4,432	6,197	8,665	12,113	16,929	48,336	9,667

주: 1. 침해사고 발생 건수의 30%를 대상으로 시스템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변동 및 이행점검 단가 변동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3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현행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원인분석, 피해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조치명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변경	재량규정
2	안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8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제3항에 따른 이행 점검,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3항 신설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소요 비용 추계
2	안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8항 신설	—	미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라 침해사고의 대응체계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 중으로, 개정안의 업무 위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예정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사업자의 조치 명령 이행 여부 점검 (안 제48조의4제3항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 간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현황은 2021년 427개 기업(1,051개 시스템*), 2022년 607개 기업(1,503개 시스템*), 2023년(11월 기준) 829개 기업(1,859개 시스템*) 등으로 증가 추세이고, 필요 조치 권고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응한 사례는 없음
 - * 분석가가 분석을 수행한 시스템 수(서버, PC 등) 기준

[표 2] 최근3년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 정보통신망 제공자에 대한 필요 조치 권고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11월 기준)
권고 현황	427개 기업 (1,051개 시스템*)	607개 기업 (1,503 시스템*)	829개 기업 (1,859개 시스템*)

주: *분석가가 분석을 수행한 시스템 수(서버, PC 등)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중 피해확산 파급도가 높은 중견기업 이상의 침해사고를 대상으로 시스템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필요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483억 3,600만원(연평균 96억 6,700만원)으로 추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해사고 시스템 분석 건수 중 피해확산 파급도가 높은 중견기업 이상의 침해사고의 비중은 약 30% 가량이었으므로, 침해 사고 분석 건수의 30%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가정하고, 최근 3년 분석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36.9%)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고 가정
- 이행여부 점검 단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민간 포렌식 업체의 시스템 분석 단가(4백만원/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¹⁾를 적용

[표 3] 최근 3년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스템 분석 건수 증가율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12월 기준 예상)	연평균 증가율
침해사고 분석 건수	1,051	1,503	1,970	36.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4]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치 명령 이행 여부 점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건, 천원,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연평균
침해사고 분석 건수	3,692	5,054	6,919	9,472	12,967	38,104	7,621
이행점검 대상 건수(a)	1,108	1,516	2,076	2,842	3,890	11,432	2,286
이행점검 단가(b)	4,000	4,088	4,174	4,262	4,352	-	-
소요예산 (a×b)	4,432	6,197	8,665	12,113	16,929	48,336	9,667

주: 1. 침해사고 발생 건수의 30%를 대상으로 시스템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변동 및 이행점검 단가 변동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3.11.6.)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2.2	2.2	2.1	2.1	2.1	2.0

IV. 부대의견

- 침해사고 발생 건수의 30%를 대상으로 시스템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변동 및 이행점검 단가 변동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현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